

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3. 12. 1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3호 - 67호
- 라. 상정일자 : 2003. 12. 8

2. 제안사유 및 취득재산의 표시

가. 제안이유

-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요하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조 소방 출장소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

나. 취득재산의 표시

(단위 : m², 천원)

재산종별	재산소재지	지목	수량	예정금액	비 고
계	1필지		1,384	47,471	
토 지	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67-6	전	1,384	47,471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

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의 경우, 1건당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이거나 1,000m² 이상인 중요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.

- 가조 소방파출소 예정부지는 가조도시계획구역내 소재해 있어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반영되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될 전망이다.
- 총 부지면적이 1,384m² 중 약 1,100m²는 소방파출소로 활용되고 나머지 284m²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임.
- 동 부지의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이며, 당초 도시계획 도로가 동 부지의 중간으로 통과하도록 된 토지이었으나,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의 선행을 옆으로 일부 변경하여 소방파출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.
- 다만, 올해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, 경남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2003. 12. 19. 개최됨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반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론요지(생략)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가조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파출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.
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
9. 기타 필요한 사항(생략)